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의견서

2023 년 8 월 14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제정고시(안) (이하 “제정(안)”)에 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¹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BSA 는 정부와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BSA 회원사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ID 관리 서비스, 보안 솔루션 및 협업 소프트웨어 등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SA 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을 위한 다수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² 제출한 바 있습니다. BSA 는 제정(안)의 목적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³. 이와 관련하여 BSA 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의 8 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¹ BSA 회원사: Adobe, Alteryx, Altium,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Bentley Systems, Box, Cisco, Cloudflare, CNC/Mastercam, Dassault, Databricks, DocuSign, Dropbox, Elastic, Graphisoft, IBM, Informatica, Juniper Networks, Kyndryl, MathWorks, Microsoft, Nikon, Okta, Oracle, Prokon, PTC, Rockwell, Rubrik, Salesforce, SAP, ServiceNow, Shopify Inc.,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plunk,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riNet, Twilio, Unity Technologies, Inc., Workday, Zendesk, and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²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의견서 (2023 년 6 월), <https://www.bsa.org/policy-filings/korea-bsa-comments-on-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ct-draft-enforcement-decree>.

³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2023) 제 1 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 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BSA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사항을 위원회가 고려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계약 기반 및 기타 메커니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상당 부분 확대하였지만, 표준계약조항(이하 “**SCC**”)을 포함한 계약 기반 이전 메커니즘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SCC** 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국가 및 지역 간 이전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기반 이전 메커니즘을 널리 채택해왔습니다. **BSA** 회원사들도 **유럽연합의 표준계약조항 (EU SCCs)**와 **영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약(International Data Transfer Agreements, IDTAs)** 등의 **SCC**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협정에 따른 국외 이전 메커니즘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정(안)와 관련하여, **BSA**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보호위원회”)가 ‘인증’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SCC** 와 같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인정되는 다른 법적 수단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주시길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호위원회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는 제정(안)의 제 12 조부터 제 14 조 및 별표 1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의 **SCC**, 영국의 **IDTA**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SCC** 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SCC** 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안)의 별표 2 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승인한 인증으로 통지 받고 목록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SCC** 를 채택한 기업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다른 인증 없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BSA** 는 제정(안)의 제 12 조부터 제 14 조 및 별표 1 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제 3 자 인증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더욱 유연성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27701,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사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여러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등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판단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로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허용됩니다. 보호위원회가 해당 국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시행령 개정(안) 제 29 조의 114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와 보호위원회는 제정(안)의 제 18 조의 22 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때, 모든 국가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주에서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집 및 사용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하거나 도입했지만, 포괄적인 연방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와 보호위원회는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할 때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유무를 넘어서 모든 관련 법과 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에 **BSA 는 보호위원회가 국가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일정을 규정하고, 한국이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국가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평가 대상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호위원회는 어느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BSA 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제정(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m Shen Hong
아태지역 정책 매니저

Tham Shen Hong

⁴ 다음을 포함함:

1. 대상국등의 법령, 규칙 또는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 3 조 등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 4 조 등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2. 대상국등에 제 1 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준수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대상국등에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4. 대상국등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률적 근거, 절차 및 피해구제 등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와 실질적 보장 여부
5. 대상국등의 감독기관이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6.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